

기부자 인식조사에 기반한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성공적 도입방안 연구*

Implication for the Introduction of Hometown Donation System in South
Korea Based on Perception Survey

홍근석**·염명배***·신두섭****

Hong, Geun-Seok·Yeom, Myung-Bae·Shin, Du-Sub

■ 목 차 ■

- I. 서론
- II. 이론적 논의
- III. 기부자 대상 인식조사 결과
- IV. 성공적인 고향사랑기부제도 도입 방안

이 연구는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잠재적)기부자의 인식을 조사·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분석결과 응답자의 약 50%가 제도 도입에 찬성하고 있으며,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수도권에서 출생한 20~30대의 참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정책목표 중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은 현행 계획이 적절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답례품 제도의 도입은 필요하지만 일정한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이 연구는 홍근석·염명배(2019)의 「일본 고향납세제도 현황과 우리나라 적용 방안」과 홍근석(2019)의 「고향사랑기부제도 도입 논의와 관련 쟁점분석」을 수정·보완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이 연구의 내용상 하자나 오류는 전적으로 연구자들에게 책임이 있음을 밝힙니다.

** 주저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교신저자,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 공동저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논문 접수일: 2019. 11. 22, 심사기간: 2019. 11. 22 ~ 12. 9, 게재확정일: 2019. 12. 9.

□ 주제어 : 고향사랑기부제도, 기부자, 인식조사, 세액공제, 답례품

This study aims to identify key issues for the introduction of Hometown Donation System in South Korea by surveying the perceptions of potential donors. The survey results show that half of the survey respondents are in favor of Hometown Donation System. However, the participation of young citizen of 20~30s living in Seoul Metropolitan Area is necessary to sustain the system. Regarding the purpose of the system, a large proportion of the respondent considers it is not appropriate for reducing the financial gaps between regions. However, there are consensus about the given rate for tax credit of hometown donation. The respondents also agree the idea of gift to donors but the limit for gift needs to be set.

□ Keywords : Hometown Donation System, Donator, Perception Survey, Tax Credit, Gift

I. 서론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도입 필요성은 다양한 관점에서 제시되어 왔으며, 주로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감소 및 재정여건 악화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많이 언급되고 있다. 현재 비수도권 지역, 특히 농어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이에 따른 재정여건 악화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인구감소와 재정여건 악화는 앞으로 보다 심각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비수도권 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안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으며, 문재인정부는 비수도권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쟁점은 “제도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용대상, 적용범위, 세액공제 방식 등과 같은 구체적인 제도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특히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논쟁의 핵심은 “열악한 지방재정 보완 및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 완화라는 정책목표가 달성가능한가?”라는 점에 있다. 즉, 제도 도입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고향사랑기부제도가 지방재정의 확충 및 지역 간 재정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 주장하는 반면,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에 의존하는 고향사랑기부제도는 지역 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는 효과를 나타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홍근석·임정빈, 2019).

따라서 고향사랑기부제도와 관련된 주요 쟁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고향사랑기부제도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제도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의 도입 및 시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주체가 되는 지역주민(잠재적 기부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발의된 고향사랑기부제도 관련 법률안의 주요 내용과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고향사랑기부제도와 관련된 주요 쟁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리고 법률안 및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도출된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주체가 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파악하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된 이 연구의 목적을 간략하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도입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 및 관련 선행연구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2019년 현재 고향사랑기부제도에 관한 법률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 「농어촌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 제정안」등 총 15개이다. 이 연구는 도입목적, 납부유형, 납부주체, 납부대상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각 법률안의 특징을 비교 및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주요 학술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도 도입 관련 쟁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둘째, 설문조사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도에 대한 (잠재적)기부자의 인식을 파악하고자 한다.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도입관련 쟁점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자 하며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잠재적)기부자를 대상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 추출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일부 선행연구에서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도입 여부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은 있지만,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도입 효과 및 구체적인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전국 표본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도입 여부, 도입 효과, 도입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주요 쟁점과 관련된 (잠재적)기부자의 인식을 파악하고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논의

1.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도입 필요성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도입 필요성은 다양한 관점에서 제시되어 왔으며, 주로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감소 및 재정여건 악화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많이 언급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까지 발의된 고향사랑기부제도 관련 법률안들은 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 해소 및 지방세수 증대를 제도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구 및 재정여건 측면에서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지역별 인구를 살펴보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의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2019년 11월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경기도가 13,228천 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이 9,733천 명으로 다음 순서를 차지하고 있다. 인구밀도의 경우에도 서울이 가장 높고 대구, 인천, 광주 등 특별시와 광역시의 인구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서울의 인구밀도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밀도의 약 3배를 초과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도권의 인구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 비수도권의 인구는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수도권 거주 인구는 1990년 18,342천 명에서 2019년 25,918천 명으로 증가한 반면, 전남의 인구는 같은 기간 동안 614

천 명 감소하였다(홍근석·염명배, 2019).

둘째,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감소는 점차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소멸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 10곳 중 4곳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로 소멸할 위험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이상호, 2018). 특히 가임여성 인구수가 고령자 수의 절반이 되지 않는 지역은 저출산·고령화에 의한 인구 감소로 공동체가 붕괴되어 소멸될 위험이 있다. 구체적으로 소멸위험지역은 경북, 경남, 전남 등에 많이 분포한 것으로 나타난다. 경북의 경우 영천시, 영주시, 안동시 등 시 자치단체에서도 소멸위험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농어촌 낙후 지역을 넘어 지방 대도시권역으로 소멸위험이 확산 될 수 있음이 우려되고 있다(이상호, 2018).

셋째,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 규모의 불균형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의 불균형을 야기한다. 2019년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재정격차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82.2%)과 전남(25.7%)의 재정자립도는 56.5%p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군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인 지방자치단체는 총 153개이며, 82개 군 지역 중 95.1%인 78개 군이 재정자립도 3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홍근석·임정빈, 2019).

2. 관련 법률안 검토

현재 고향사랑기부제도와 관련하여 발의된 법률안¹⁾은 2018년 9월 13일 기준 총 15건이며, 2009년 3월에 발의된 이주영 의원(안)에서부터 2018년 9월에 발의된 윤영일 의원(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다. 시기별로는 제18대 국회에서 2건, 제20대 국회에서 13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이 중에서 고향사랑기부제도와 관련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안은 5건이며, 나머지 10건은 기존 법률의 일부 개정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도 관련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홍근석·염명배, 2019).

먼저 2009년 3월에 발의된 이주영 의원(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는 방안이다. 이 법률안은 지역과 수도권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가 관할 구역 밖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부터 고향투자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1년 7월에 발의된 홍재형 의원(안)은 「소득세법」을 일부 개

1) 관련 법률안 검토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를 통해 실시하였다.

정하는 방안이다. 이 법률안은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비수도권 거주자가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의 10% 이내를 본인이 지정하는 고향(수도권 제외)의 세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2016년 7월에 발의된 황주홍 의원(안)은 「농어촌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는 방안이다. 이 법률안은 농어촌 지역의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농어촌발전공동모금회를 설립하여 농어촌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6년 8월에 발의된 안호영 의원(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는 방안이다. 이 법률안은 지방세수 증대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한 지역에 10년 이상 거주한 주민 등이 해당 지역의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2017년 5월에 발의된 전재수 의원(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는 방안이다. 이 법률안은 지방세수 증대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재정여건을 기준(재정자립도 또는 재정자주도가 20% 이하)으로 100만원 이하의 고향기부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7년 6월에 발의된 홍의락 의원(안)은 「소득세법」을 일부 개정하는 방안이다. 이 법률안은 비수도권의 재정여건 개선과 지역 간 재정불균형 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서울·경기·인천(수도권)의 거주자는 본인이 납부할 소득세액의 10% 이내의 금액을 본인이 지정하는 고향(수도권 제외)의 세입으로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7년 6월에 발의된 강효상 의원(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는 방안이다. 이 법률안은 지방재정 확충과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기부자의 출생지 및 이에 준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모집하는 기부금의 경우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7년 8월에 발의된 박덕흠 의원(안)은 「지방세법」을 일부 개정하는 방안이며, 이 법률안은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 간 재정불균형 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납세자가 지방소득세의 30% 범위에서 현행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세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도 또는 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 또는 구의 세입으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2017년 8월에 발의된 김광립 의원(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는 방안이다. 이 법률안은 애향심 고취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원 확충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는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부터 고향기부금을 모집·접수하고 고향기부금을 자발적으로 기탁한 사람에게 특산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7년 9월에 발의된 김두관 의원(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일부 개정하는 방안이다. 이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원 확충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재정자

립도가 30% 이하인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해당 지역 출신자에게 연간 3천만 원 이하의 고향사랑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2017년 9월에 발의된 이개호 의원(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는 방안이다. 이 법률안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열악한 지방재정 보완, 국가균형발전 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접수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7년 9월에 발의된 주승용 의원(안)은 「소득세법」을 일부 개정하는 방안이다. 이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수도권 및 대도시 거주자가 납부할 소득세의 10% 한도에서 본인이 지정한 시·군의 세입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7년 11월에 발의된 이명수 의원(안)은 「지방세법」을 일부 개정하는 방안이다. 이 법률안은 애향심 고취,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 해소, 지역활성화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대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 중 일부를 고향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8년 8월에 발의된 정인화 의원(안)은 「지역균형발전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이다. 이 법률안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농촌 등 지방을 살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지역균형발전 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으며, 기부자에게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2018년 9월에 발의된 윤영일 의원(안)은 「고향발전 기부금법」을 제정하는 방안이다. 이 법률안은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지역 간 재정불균형 해소,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 복지 확대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고향사랑기부제도 관련 법률안의 주요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홍근석·임정빈, 2019). 첫째,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도입 목적은 지방재정 확충,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애향심 고취,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등이며, 대부분 비수도권 지역의 열악한 생활여건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둘째,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납부 유형은 조세와 기부금 등 두 가지 유형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개호의원(안)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안)에서는 기부금 형태로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 셋째, 기부자 요건 및 납부 대상 역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이개호의원(안)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안)에서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넷째, 세액공제 방식의 경우 대부분의 법률안에서 정치자금기부금과 동일한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표 1〉 고향사랑기부제도 관련 법률안 비교

대표 발의자	제안일	법률안	도입목적	주요내용
이주영 의원	2009.3.1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지역불균형 해소	기초자치단체가 관할 구역 밖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부터 고향투자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홍재형 의원	2011.7.7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지역불균형 해소, 수도권 과밀화 해소	비수도권 거주자가 본인이 납부할 소득세액의 10% 이내 금액을 본인이 지정하는 고향(수도권 제외)의 세입으로 신청
황주홍 의원	2016.7.13	「농어촌 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제정)	농어촌 발전, 국가균형발전	농어촌발전공동모금회를 설립하여 농어촌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부금품 모집
안호영 의원	2016.8.16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지방세수 증대, 지역균형발전	한 지역에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 등이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고향기부금품으로 접수
전재수 의원	2017.5.15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등 4건	지방세수 증대, 지역균형발전	재정자립도 또는 재정자립도가 20% 이하인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100만원 이하의 고향 기부금 모집
홍의락 의원	2017.6.1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비수도권 재정여건 개선, 지역 간 재정불균형 완화	서울·경기·인천(수도권)의 거주자는 본인이 납부할 소득세액의 10% 이내의 금액을 본인이 지정하는 고향(수도권 제외)의 세입으로 신청
강효상 의원	2017.6.27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등 4건	지방재정 확충, 기부문화 활성화	기부자의 출생지 및 이에 준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모집하는 기부금의 경우 기부금품 모집
박덕흠 의원	2017.8.8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등 2건	지방재정 확충, 지역 간 재정불균형 완화	납세자가 지방소득세의 30% 범위에서 현행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세자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도 또는 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 또는 구 세입으로 간주
김광림 의원	2017.8.9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애향심 고취, 지방재정 확충	기초자치단체는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부터 고향기부금을 모집·접수하고 고향기부금을 자발적으로 기탁한 사람에게 특산물 등 제공
김두관 의원	2017.9.14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등 4건	지방재정 확충, 지역균형발전	재정자립도가 30% 이하인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해당 지역 출신자에게 연간 3천만 원 이하의 고향사랑기부금 모집

대표 발의자	제안일	법률안	도입목적	주요내용
이개호 의원	2017.9.27	「고행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제정)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지방재정 확충, 국가균형발전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행사랑 기부금을 모금·접수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 제공
주승용 의원	2017.9.29	「고행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제정)	지역 간 재정불균형 해소, 지역균형 발전	수도권 및 대도시 거주자가 납부할 소득세의 10% 한도에서 본인이 지정한 시·군의 세입으로 이전
이명수 의원	2017.11.17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애향심 고취, 지역 간 재정불균형 해소, 지역활성화	대도시로 이전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의 일부를 자신의 고향에 납부
정인화 의원	2018.8.27	「지역균형발전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제정)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지역활성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지역균형발전 기부금을 모금·접수 할 수 있으며, 기부자에게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 제공
윤영일 의원	2018.9.13	「고행발전 기부금 법안」(제정)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지역 간 재정불균형 해소, 지역균형발전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 복지 확대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을 바탕으로 작성.

3. 선행연구 검토

고행사랑기부제도에 관한 선행연구²⁾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일본의 고행납세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성과 및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행사랑기부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는 연구이다. 이러한 유형의 연구가 지금까지 많이 이루어졌으며, 대표적으로 염명배(2010), 신두섭·염명배(2016), 주만수(2017), 이병산(2018), 염명배(2019), 조재욱(2019) 등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두 번째 유형은 고행사랑기부제도의 도입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연구이다. 아직 구체적인 제도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의 연구는 많이 수행되지는 않았으며, 대표적으로 남황우(2017), 신두섭·하혜수(2017), 임정빈·김성찬·홍근석(2017), 국중호·염명배(2018) 등의

2) 고행사랑기부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는 강원연구원의 정책보고서 등을 통해 많이 제시되었으나, 이 연구에서는 정책보고서 등을 제외한 학술논문만을 선행연구 검토의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강원연구원의 정책보고서 중 육동한 외(2017), 육동한·박상현(2017), 육동한·박상현(2018), 육동한·박상현(2019) 등은 고행사랑기부제도 도입 논의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³⁾가 있다. 이 연구는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주요 쟁점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첫 번째 유형의 고향사랑기부제도 관련 선행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먼저 염명배(2010)는 일본 고향납세제도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한국형 고향세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이 연구는 고향세제도의 부정적 측면으로 조세원칙 위배 및 납세자 간 형평성 저해, 지방자치 원칙과의 충돌, 세수추계의 불안전성, 정책목표 달성 가능성 부족, 지역 간 갈등 심화 및 과열 유치 경쟁, 납세 관련 비용 증가 등을 제시하였다. 한국형 고향세제도의 도입을 위해 고향 개념 확대, 개인 및 기업의 자유로운 기부 허용, 국세 중심의 소득공제, 구체적이고 집중적인 정책수단 활용 등을 주장하였다. 신두섭·염명배(2016)는 일본 고향납세제도의 성과를 평가하고, 우리나라 고향세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일본 고향납세제도의 성공요인으로 다양한 답례품 제공, 기부금 특례제공 공제한도 상한 증가, 고향납세 원스톱특례제도 도입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고향세제도의 이론적·제도적 기반 취약, 지역 간 과열 유치 경쟁,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 가능성 부족, 세수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부족, 제도의 지속가능성 부족 등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시하였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 기부금품 모집 허용(법률 개정), 국세 중심의 소득공제, 자기부담금 폐지, 답례품 금지 또는 답례품 가격 상한 설정, 기부 대상 지역별 소득공제를 차등화(응원지수 산출) 등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염명배(2017)는 고향세제도와 관련된 법률안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향세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쟁점들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고향세의 성격 규정(조세 또는 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과 동일한 세액공제 방식의 조정 여부, 답례품 제공 허용 여부, 기업 대상 고향세 허용 여부 등을 주요 쟁점으로 파악하였다. 고향세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서는 지방재정에 대한 보조적 수단으로 고향세제도를 인식해야 하고, 정치자금기부금과 동일한 수준의 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일부 지역 등을 대상으로 파일럿테스트를 실시한 후 제도를 확대해야 하며, 과도한 유치 경쟁을 통제·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주만수(2017)는 일본 고향납세제도와 선행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고향기부제도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기부제도를 통한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의 어려움,

3) 신두섭·하혜수(2017)는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기부동기에 관한 지역주민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설문조사의 대상이 206명에 불과하며,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는 측면에서 설문조사의 신뢰성과 대표성이 다소 낮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연구들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2차 자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제도 도입의 효과를 추정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지방재정조정제도 고려 미흡, 답례품의 부정적 효과, 제3자 뇌물 가능성, 지방분권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고향기부제도가 지니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제도 도입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병산(2018)은 일본 고향납세제도의 주요 내용 및 관련 법률안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고향납세제도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쟁점으로는 세액공제에 따른 비용부담 주체, 세액공제 확대 여부, 답례품 도입 여부, 기부지역 제한 여부 등을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고향납세에 따른 기부금은 국세(소득세) 위주로 세액공제를 부여하고, 40%를 한도로 2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하는 것으로 제안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기부금액의 30%를 한도로 답례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기부대상 및 기부주체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을 설정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염명배(2019)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각각의 쟁점에 대한 정책대안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기부주체와 정책주체 간, 정책목표 간, 재원분담 주체 간 상충관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고향사랑 기부제의 도입과 관련하여 정책목적 달성 가능성, 세액공제율 수준, 답례품 제도 도입 여부 등 3가지의 주요 쟁점을 제시하였으며, 각각의 쟁점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였다.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서는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간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신중하게 마련해야 하며, 점진적·동태적 접근방식에 따라 파일럿테스트 등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재욱(2019)은 일본 고향납세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제시한 후 우리나라 고향세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이 연구는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라는 정책목표의 실현 가능성,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를 바탕으로 하는 기부금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답례품으로 인한 지역 간 과열 경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간의 부패 문제 등을 고향세제도 도입 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으로 지적하였다. 고향세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전문가 포함 협의체 구성, 답례품 한도 및 범위 관련 세부 규정 마련, 고향의 개념 및 기준 설정, 고향세 관련 별도 계정 마련 등을 제시하였다.

〈표 2〉 선행연구 검토

구분	주요 쟁점	도입 방안
염명배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원칙 위배 및 납세자 간 형평성 저해 - 지방자치 원칙과의 충돌 - 세수추계의 불안정성 - 정책목표 달성 가능성 부족 - 지역 간 갈등 심화 및 과열 유치 경쟁 - 납세 관련 비용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향 개념 확대 - 개인 및 기업의 자유로운 기부 허용 - 국세 중심의 소득공제 - 구체적이고 집중적인 정책수단 활용
신두섭 염명배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론적·제도적 기반 취약 - 지역 간 과열 유치 경쟁 -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 가능성 부족 - 세수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부족 - 제도의 지속가능성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 기부금품 모집 허용 - 가급적 국세에서 소득공제 - 자기부담금 폐지 - 답례품 금지 또는 가격 상한 설정 - 지역별 소득공제를 차등화
염명배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향세의 성격 규정 - 세액공제 방식 조정 여부 - 답례품 제공 허용 여부 - 기업판 고향세제도 도입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재정에 대한 보조적 수단으로 인식 - 정치자금기부금과 동일한 세액공제 적용 - 파일럿테스트 실시 - 과도한 유치 경쟁 통제장치 마련
주만수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 부족 - 지방재정조정제도 고려 미흡 - 답례품의 부정적 효과 - 제3자 뇌물 가능성 - 지방분권 원칙과의 연계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된 문제 해결 시까지 제도 도입 재고
이병산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액공제에 따른 비용부담 주체 - 세액공제 확대 여부 - 답례품 도입 여부 - 기부지역 제한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 중심의 소득공제 - 20만원까지 전액 공제(40% 한도) - 기부금액의 30%까지 답례품 제공 -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가능 - 기부자가 기부금의 용도 지정 가능
염명배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목표 달성 가능성 - 세액공제율 수준 - 답례품 제도 도입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간 연계 강화 - 정치자금기부금과동일한 세액공제 적용 - 일정 수준 이하의 답례품 허용 - 파일럿테스트 실시
조재욱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 가능성 - 기부금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 답례품의 부작용 - 부패 발생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포함 협의체 구성 - 답례품 관련 세부 규정 마련 - 고향기준 설정 - 고향세 관련 별도 계정 마련

Ⅲ. 기부자 대상 인식조사 결과

1. 설문문항 설계

이 연구에서 수행한 설문조사의 문항은 염명배(2019)가 제시한 고향사랑기부제도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기부자의 인식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설계하였다. 염명배(2019)에서 제시된 주요 쟁점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정책목적과 정책수단을 보다 구체화해서 정책효과성을 높일 것인가?’, 둘째는 ‘기부의사를 촉진하기 위해서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는가?’, 셋째는 ‘기부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답례품 제도를 도입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 중에서 특히 첫 번째 쟁점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고향사랑기부제도 관련 법안들이 ‘지방재정 확충’이나 ‘지역 간 세수불균형 완화’ 등과 같은 공통된 목적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고용 증대’,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소’, ‘지방소멸 억제’ 등 매우 다양한 목적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적으로 자발적 의사에 의해 기부행위를 하는 (잠재적)기부자가 실제로 어떤 목적을 위해 기부하려고 하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관점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설계에 따라 설문지의 구성 내용은 우선 고향사랑기부제도에 대한 도입 찬반 의견, 어느 지역 주민이 어느 지역으로 얼마나 기부하려고 하는가 하는 등 일반적인 현황과 제도 도입 효과에 관한 인식 및 제도 도입 방안(세액공제, 용도, 답례품 등) 등 보다 구체적인 쟁점에 대한 기부자의 의견을 알아보기로 하는 의도에서 작성되었다.

2. 설문조사 개요

이 연구는 17개 시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⁴⁾를 실시하였으며, 한국리서치의 MS 패널 44만 명을 이용한 온라인 및 모바일 조사를 통해 수행되었다. 표본은 2019년 3월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수에 맞춰 추출하였다. 사전 조사는 2019년 3월 18일부터 3월 20일까지 3일 간 수행되었다. 총 1,980명에게 메일을 발송하였으며, 219명이 설문에 참여하여 설문참여 비율은 11.1%로 나타났다. 설문참여자에 대한 검증 결과 118명의 응답이 설문분석에 사용하기에 부

4) 설문조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홍근석·염명배(2019)에 제시되어 있다.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사전 조사의 총 응답자 수는 101명(응답률 5.1%)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는 2019년 3월 27일부터 4월 4일까지 10일 간 수행되었다. 총 18,421명에게 메일을 발송하였으며, 1,362명이 설문에 참여하여 설문참여 비율은 7.4%로 나타났다. 설문참여자에 대한 검증 결과 461명의 응답이 설문분석에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본 조사의 총 응답자 수는 901명(응답률 4.9%)으로 나타났다. 사전조사와 본 조사를 모두 더한 분석대상 총 응답자 수는 1,002명이다.

3. 분석결과

1) 제도 도입 여부에 관한 인식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응답자들에게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한 후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도입 여부에 대한 찬반 의견을 조사한 결과, 다수의 응답자들이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찬성(370명, 36.9%)’과 ‘매우 찬성(114명, 11.4%)’을 더해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응답자가 48.3%(484명)인 반면, ‘대체로 반대(78명, 7.8%)’와 ‘매우 반대(17명, 1.7%)’을 더해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응답자는 9.5%(95명)로 나타났다.

〈표 3〉 고향사랑기부제도 도입에 대한 찬반 여부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 반대	17	1.7
대체로 반대	78	7.8
보통	423	42.2
대체로 찬성	370	36.9
매우 찬성	114	11.4
합계	1,002	100.0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도입 여부에 대한 출생지역별 분석결과 비수도권 지역에서 출생한 응답자들이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도입에 대해 보다 많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대체로 찬성(236명, 37.5%)’과 ‘매우 찬성(88명, 14.0%)’을 더해 324명(51.5%)이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수도권 지역의 경우 ‘대체로 찬성(134명, 36.0%)’과 ‘매우 찬성(26명, 7.0%)’을 더해 160명(43.0%)이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향후 고향사랑기부제도가 도입될 경우 수도권 지역에서 출생한 사람들보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출생한 사람들이 고향사랑기부제도에 참여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연령별 분석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도입에 대해 보다 많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이상의 경우 '대체로 찬성(120명, 36.6%)'과 '매우 찬성(50명, 15.2%)'을 더해 170명(51.8%)이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20대 이하의 경우 '대체로 찬성(63명, 32.8%)'과 '매우 찬성(12명, 6.2%)'을 더해 75명(39.0%)이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향사랑기부제도의 활성화 및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2-30대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4〉 고향사랑기부제도 도입에 대한 찬반 여부: 출생지역별, 연령별

구분	출생지역별				연령별							
	수도권		비수도권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이상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매우 반대	5	1.3	12	1.9	2	1.0	4	1.8	8	3.1	3	0.9
대체로 반대	29	7.8	49	7.8	17	8.9	19	8.4	16	6.2	26	7.9
보통	178	47.8	245	38.9	98	51.0	92	40.9	104	40.5	129	39.3
대체로 찬성	134	36.0	236	37.5	63	32.8	92	40.9	95	37.0	120	36.6
매우 찬성	26	7.0	88	14.0	12	6.2	18	8.0	34	13.2	50	15.2
합계	372	100.0	630	100.0	192	100.0	225	100.0	257	100.0	328	100.0

다음으로 고향사랑기부제도가 도입될 경우 고향사랑기부금을 낼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결과 응답자 중 606명(60.5%)이 기부금을 낼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지역별 분석결과 비수도권에서 출생한 응답자의 기부 의사(64.6%)가 수도권에서 출생한 응답자(53.5%)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령별 분석결과 50대 이상 응답자의 기부 의향(64.6%)이 20대 이하 응답자(52.6%)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출생한

5) 독립표본 t-test 결과 t값이 -2.642(p<.01)로 수도권 지역에서 출생한 사람과 비수도권 지역에서 출생한 사람 간의 인식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6)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 결과 F값이 3.115(p<.05)로 연령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도입 여부에 대한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들 중 연령이 높은 사람들이 다른 집단의 사람들에 비해 고향사랑기부금을 많이 기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5〉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의사: 출생지역별, 연령별

구분	출생지역별				연령별							
	수도권		비수도권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이상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의사 있음	199	53.5	407	64.6	101	52.6	137	60.9	156	60.7	212	64.6
의사 없음	173	46.5	223	35.4	91	47.4	88	39.1	101	39.3	116	35.4
합계	372	100.0	630	100.0	192	100.0	225	100.0	257	100.0	328	100.0

2) 제도 도입 효과에 관한 인식

고향사랑기부제도가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효과를 나타낼 것인지에 대해서 41.0%의 응답자들은 지방재정 확충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그렇다(352명, 35.1%)’와 ‘매우 그렇다(59명, 5.9%)’를 더해 지방재정 확충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응답자가 411명(41.0%)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그렇지 않다(218명, 21.8%)’와 ‘전혀 그렇지 않다(45명, 4.5%)’를 더해 263명(26.3%)이 지방재정 확충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지방재정 확충 효과에 대한 출생지역(수도권, 비수도권)별 인식 차이는 크지 않은 반면, 연령별로는 다소 차이가 존재하는 것⁸⁾으로 나타났다. 40대와 50대 이상 응답자들은 각각 121명(47.1%)과 150명(41.0%)이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지방재정 확충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제시한 반면, 20대 이하 응답자들은 53명(27.6%)이 지방재정 확충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제시하고, 70명(36.4%)이 부정적인 인식을 제시하였다. 즉, 20대 이하의 응답자들이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지방재정 확충 효과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 출생지역에 따른 독립표본 t-test 결과 t값이 -2.969(p<.01)이며, 연령에 따른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F값이 4.377(p<.01)로 응답자들의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F값이 8.564(p<.01)로 연령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지방재정 확충 효과에 대한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지방재정 확충 효과: 연령별

구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이상		합계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전혀 그렇지 않다	16	8.3	13	5.8	12	4.7	4	4.5	45	4.5
그렇지 않다	54	28.1	44	19.6	55	21.4	65	21.8	218	21.8
보통이다	69	35.9	81	36.0	69	26.8	109	32.7	328	32.7
그렇다	45	23.4	75	33.3	103	40.1	129	35.1	352	35.1
매우 그렇다	8	4.2	12	5.3	18	7.0	21	5.9	59	5.9
합계	192	100.0	225	100.0	257	100.0	328	100.0	1,002	100.0

다음으로 고향사랑기부제도가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 효과를 나타낼 것인지에 대한 분석결과 다수의 응답자들은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그렇지 않다(332명, 33.1%)’와 ‘전혀 그렇지 않다(71명, 7.1%)’를 더해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자가 403명(40.2%)으로 나타난 반면, ‘그렇다(218명, 21.8%)’와 ‘매우 그렇다(23명, 2.3%)’를 더해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응답자는 241명(24.1%)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 효과에 대해서도 출생지역(수도권, 비수도권)별 인식 차이는 크지 않은 반면, 연령별로는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이하 응답자들은 100명(52.0%)이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제시한 반면, 50대 이상 응답자들은 105명(32.0%)이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을 제시하였다.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 효과의 경우에도 지방재정 확충 효과와 마찬가지로 20대 이하의 응답자들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제시하였다.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 효과와 관련하여 부정적인 인식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를 제도 도입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9)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F값이 10.589(p<.01)로 연령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 효과에 대한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 효과: 연령별

구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이상		합계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전혀 그렇지 않다	21	10.9	26	11.6	14	5.4	10	3.0	71	7.1
그렇지 않다	79	41.1	74	32.9	84	32.7	95	29.0	332	33.1
보통이다	61	31.8	85	37.8	84	32.7	128	39.0	358	35.7
그렇다	27	14.1	34	15.1	69	26.8	88	26.8	218	21.8
매우 그렇다	4	2.1	6	2.7	6	2.3	7	2.1	23	2.3
합계	192	100.0	225	100.0	257	100.0	328	100.0	1,002	100.0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답례품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나타낼 것인지에 대한 분석결과 다수의 응답자들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그렇다(438명, 43.7%)’와 ‘매우 그렇다(48명, 4.8%)’를 더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응답자가 486명(48.5%)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답례품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의 경우에는 출생지역과 연령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구분	빈도(명)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34	3.4
그렇지 않다	105	10.5
보통이다	377	37.6
그렇다	438	43.7
매우 그렇다	48	4.8
합계	1,002	100.0

고향사랑기부제도의 구체적인 기부 지역에 대한 분석결과 전남에 기부하겠다는 응답자가 79명(13.0%)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강원(63명, 10.4%), 경북(58명, 9.6%), 충남(55명, 9.1%), 경남(52명, 8.6%) 등의 순서이며, 서울·인천·경기를 포함한 수도권에 기부하겠다는 응답자는 76명(12.5%)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특별·광역시보다는 도에 기부하겠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에 기부하겠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표 9〉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희망 지역

구분	빈도(명)	비율(%)	구분	빈도(명)	비율(%)	구분	빈도(명)	비율(%)
서울	31	5.1	울산	3	0.5	전북	48	7.9
부산	38	6.3	세종	7	1.2	전남	79	13.0
대구	24	4.0	경기	31	5.1	경북	58	9.6
인천	14	2.3	강원	63	10.4	경남	52	8.6
광주	20	3.3	충북	38	6.3	제주	31	5.1
대전	14	2.3	충남	55	9.1	합계	606	100.0

기부 희망 지역에 대한 출생지역에 따른 분석결과 자신의 출생지역에 기부하겠다는 응답자(218명, 21.8%)보다 타 지역에 기부하겠다는 응답자(388명, 38.7%)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남, 충남, 충북, 경북 등은 자신의 출생지역에 기부하겠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도권이나 대도시 지역에서 출생한 응답자의 경우 타 지역에 기부하겠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비수도권이나 농어촌 지역에서 출생한 응답자의 경우 자신이 출생지역에 기부하겠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0〉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희망 지역: 출생지역별

구분	출생지역에 기부		타 지역에 기부		미 기부		합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서울	14	6.2	101	44.7	111	49.1	226	100.0
부산	11	14.5	32	42.1	33	43.4	76	100.0
대구	9	18.4	15	30.6	25	51.0	49	100.0
인천	4	11.1	17	47.2	15	41.7	36	100.0
광주	7	25.0	10	35.7	11	39.3	28	100.0
대전	6	23.1	9	34.6	11	42.3	26	100.0
울산	3	15.0	4	20.0	13	65.0	20	100.0
세종	0	0.0	2	50.0	2	50.0	4	100.0
경기	13	11.8	50	45.5	47	42.7	110	100.0
강원	16	34.8	20	43.5	10	21.7	46	100.0
충북	12	34.3	9	25.7	14	40.0	35	100.0
충남	22	43.1	14	27.5	15	29.4	51	100.0
전북	17	29.8	23	40.4	17	29.8	57	100.0
전남	28	45.9	19	31.1	14	23.0	61	100.0
경북	29	36.7	25	31.6	25	31.6	79	100.0

구분	출생지역에 기부		타 지역에 기부		미 기부		합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경남	22	26.8	31	37.8	29	35.4	82	100.0
제주	5	31.2	7	43.8	4	25.0	16	100.0
합계	218	21.8	388	38.7	396	39.5	1,002	100.0

기부 희망 지역에 대한 연령별 분석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자신의 출생지역에 기부하겠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50대 이상의 경우 자신의 출생지역에 기부하겠다는 응답이 94명(28.7%)으로 나타난 반면, 20대 이하의 경우에는 15명(7.8%)이 자신의 출생지역에 기부하겠다고 응답하였다. 자신의 출생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 기부하겠다는 응답은 20대 이하가 86명(44.8%)이고, 50대 이상이 118명(36.0%)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대 이하의 경우 어떤 지역에도 기부하지 않겠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47.4%(91명)으로 50대 이상(396명, 39.5%)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희망 지역: 연령별

구분	출생지역에 기부		타 지역에 기부		미 기부		합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20대 이하	15	7.8	86	44.8	91	47.4	192	100.0
30대	47	20.9	90	40.0	88	39.1	225	100.0
40대	62	24.1	94	36.6	101	39.3	257	100.0
50대 이상	94	28.7	118	36.0	116	35.4	328	100.0
합계	218	21.8	388	38.7	396	39.5	1,002	100.0

다음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중 어느 지역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할 것인지에 대한 분석결과 비수도권 지역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하겠다는 응답자가 수도권에 기부하겠다는 응답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지역에 기부하겠다는 응답자는 530명(52.9%)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지역에서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도권 지역에 기부하겠다는 응답자는 76명(7.6%)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지역에서 10% 이하로 나타났다. 즉,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상관없이 50% 이상의 응답자들이 비수도권 지역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희망 지역: 거주지역별

구분	수도권에 기부		비수도권에 기부		미 기부		합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서울	21	10.8	101	52.1	72	37.1	194	100.0
부산	1	1.5	39	59.1	26	39.4	66	100.0
대구	0	0.0	28	60.9	18	39.1	46	100.0
인천	11	18.7	25	42.4	23	39.0	59	100.0
광주	0	0.0	16	57.1	12	42.9	28	100.0
대전	0	0.0	17	58.6	12	41.4	29	100.0
울산	0	0.0	11	47.8	12	52.2	23	100.0
세종	1	9.1	6	54.5	4	36.4	11	100.0
경기	23	8.9	126	48.6	110	42.5	259	100.0
강원	4	14.3	18	64.3	6	21.4	28	100.0
충북	3	10.3	11	37.9	15	51.7	29	100.0
충남	3	8.4	17	47.2	16	44.4	36	100.0
전북	1	2.9	23	65.7	11	31.4	35	100.0
전남	3	9.4	19	59.4	10	31.2	32	100.0
경북	1	2.0	28	57.1	20	40.8	49	100.0
경남	3	4.6	38	58.5	24	36.9	65	100.0
제주	1	7.7	7	53.8	5	38.5	13	100.0
합계	76	7.6	530	52.9	396	39.5	1,002	100.0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 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기부 희망 지역에 대한 분석결과를 통해서 볼 때, 고향사랑기부제도는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석 결과 비수도권이나 농어촌 지역에서 출생한 응답자의 경우 자신이 출생지역에 기부하겠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상관없이 비수도권에 기부하겠다는 응답자가 5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향사랑기부제도가 도입될 경우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기부금이 많아지게 되며, 이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재정격차가 다소 완화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제도 도입 방안에 관한 인식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세액공제 수준에 대해 519명(51.8%)의 응답자들은 현행 계획을 유지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계획 보다 확대'를 제시한 응답자도 331명(33.0%)으로 '계획 보다 축소'를 제시한 응답자(152명, 15.2%)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제시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세액공제 수준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13〉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적정 세액공제 수준

구분	빈도(명)	비율(%)
계획 유지	519	51.8
계획 보다 축소	152	15.2
계획 보다 확대	331	33.0
합계	1,002	100.0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세액공제 확대가 기부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338명(33.7%)의 응답자들이 세액공제가 확대되면 기부금을 늘일 생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288명(28.8%)은 세액공제 확대에도 기부금을 늘일 생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세액공제가 확대될 경우 더 많이 기부를 하겠다는 응답자가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의 분석결과에서 현재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세액공제 수준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나기는 했지만, 고향사랑기부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자기부담금 2,000엔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고향사랑기부제도도 세액공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14〉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기부 의사

구분	빈도(명)	비율(%)
전혀 없음	82	8.2
대체로 없음	206	20.6
보통	376	37.5
대체로 있음	316	31.5
매우 있음	22	2.2
합계	1,002	100.0

고향사랑기부금의 사용 용도를 지정하는 것에 대해 676명(67.5%)의 응답자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80명(8.0%)은 고향사랑기부금의 사용 용도를 지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측면에서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도입 시 기부금의 용도를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에도 사용 용도를 지정하는 GCF형 고향납세 제도의 도입 이후 고향납세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는 측면¹⁰⁾에서 이러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표 15〉 고향사랑기부금의 용도 지정 여부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 반대	17	1.7
대체로 반대	63	6.3
보통	246	24.6
대체로 찬성	503	50.2
매우 찬성	173	17.3
합계	1,002	100.0

고향사랑기부금의 사용 용도가 지정될 때 어떤 용도로 사용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분석결과 '건강·의료·복지' 등에 사용되기를 원한다는 응답이 268명(26.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지역산업 진흥(129명, 12.9%)', '환경(122명, 11.2%)', '아동·육아(112명, 11.2%)', '교육·인재육성(96명, 9.6%) 등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 의견으로는 '기반시설 건설', '취업 지원', '농촌 지역 교통수단' 등이 제시되었다.

〈표 16〉 고향사랑기부금의 용도

구분	빈도(명)	비율(%)	구분	빈도(명)	비율(%)
건강·의료·복지	268	26.7	마을만들기·시민활동	57	5.7
교육·인재육성	96	9.6	관광·교류·정주촉진	74	7.4
환경	122	12.2	안심·안전·방재	71	7.1
아동·육아	112	11.2	재해지원	56	5.6
지역산업 진흥	129	12.9	기타	5	0.5
스포츠·문화진흥	12	1.2	합계	1,002	100.0

¹⁰⁾ GCF(Government Crowd Funding)는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에 기부를 하면 기존의 고향납세제도와 동일하게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새로운 제도이다. 일본의 경우 고향납세에 대한 답례품 경쟁이 과열되면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답례품 마련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GCF는 답례품에 좌우되지 않고 기부금의 사용처에 공감하는 주민들로부터 기부를 받는다는 점에서 고향납세제도의 의의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도에서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741명(74.0%)이 답례품 제공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61명(26.0%)이 답례품 제공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향사랑기부제도 도입 시 답례품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17〉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답례품 제공 여부

구분	빈도(명)	비율(%)
찬성	741	74.0
반대	261	26.0
합계	1,002	100.0

답례품 제공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한 분석결과 101명(38.7%)이 ‘기부금의 일부 유출을 반대하기 때문에’라고 제시하였으며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본질에 위배되기 때문에(94명, 36.0%)’, ‘답례품을 필요로 하지 않아서(65명, 24.9%)’ 등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특색 있는 답례품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측면에서 답례품 생산 및 제공을 위해 기부금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표 18〉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답례품 제공 반대 이유

구분	빈도(명)	비율(%)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본질에 위배되기 때문에	94	36.0
굳이 답례품을 필요로 하지 않아서	65	24.9
기부금의 일부 유출을 반대하기 때문에	101	38.7
기타	1	0.4
합계	261	100.0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답례품을 제공한다면 어떠한 답례품을 원하는지 분석한 결과, 339명(33.8%)이 ‘지역 농산물(쌀 제외, 가공품 포함)’이라고 제시하였으며 ‘지역 공공시설 이용권(175명, 17.5%)’, ‘지역 축산품(105명, 10.5%)’, ‘지역 쌀(98명, 9.8%)’, ‘지역 수산물(66명, 6.6%)’ 등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지역 상품권’, ‘총량제 봉투’, ‘명예 시민권’, ‘기부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품목’ 등이 제시되었다.

〈표 19〉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답례품 유형

구분	빈도(명)	비율(%)	구분	빈도(명)	비율(%)
지역 농산물 (쌀 제외, 가공품 포함)	339	33.8	지역 공공시설 이용권	175	17.5
지역 쌀 (가공품 포함)	98	9.8	지역 개최 이벤트 초대	34	3.4
지역 축산품 (가공품 포함)	105	10.5	재난 피해지역 특산품	56	5.6
지역 수산물 (가공품 포함)	66	6.6	기타	15	1.5
지역 전통공예품 등	52	5.2	합계	1,002	100.0
감사장	62	6.2	-	-	-

기부금을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답례품을 제공한다면 액수는 기부금의 몇 %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해 분석한 결과, 507명(50.6%)이 ‘10% 이하’라고 제시하였으며 ‘10% 초과 - 20% 이하(294명, 29.3%)’, ‘20% 초과 - 30% 이하(105명, 10.5%)’ 등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즉, 90.4%의 응답자가 답례품 비율을 기부금의 3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하였다. 답례품에 지나치게 치중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간 과열경쟁으로 인해 기부금의 대부분을 답례품에 지출하는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답례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과열경쟁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의 80% 이상을 답례품 비용으로 지출하는 문제점이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총무성에서는 답례품 비율을 기부금의 3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고향사랑기부제도에 대한 답례품의 제공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고향사랑기부금의 30% 이하로 답례품 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20〉 고향사랑기부제도의 기부금 대비 답례품 비율

구분	빈도(명)	비율(%)
10% 이하	507	50.6
10% 초과 - 20% 이하	294	29.3
20% 초과 - 30% 이하	105	10.5
30% 초과 - 40% 이하	32	3.2
40% 초과 - 50% 이하	53	5.3
기타	11	1.1
합계	1,002	100.0

IV. 성공적인 고향사랑기부제도 도입 방안

1. 분석결과 종합

이 연구는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잠재적)기부자의 인식을 조사·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를 적용하여 설문조사 대상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1,002명의 (잠재적)기부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고향사랑기부제도 도입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도입 여부에 대한 분석결과 48.3%의 응답자가 제도 도입에는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수도권 지역에서 출생한 응답자와 50대 이상의 응답자들이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향사랑기부금을 낼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결과에서도 출생지역과 연령에 따라 응답자들의 인식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측면에서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수도권 지역에서 출생한 응답자와 20대 응답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정책목표 달성 가능성과 관련하여 응답자들은 지방재정 확충 효과와 답례품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낸 반면,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 효과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지방재정 확충 효과와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 효과에 대해서는 연령별로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대 이하의 응답자들이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지방재정 확충 효과와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 효과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 효과와 관련하여 부정적인 인식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를 제도 도입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¹¹⁾으로 생각된다.

셋째, 세액공제 비율 설정과 관련하여 51.8%의 응답자들이 현행 계획을 유지하는 것이 적

11) 그러나 기부 희망 지역에 대한 분석결과 비수도권이나 농어촌 지역에서 출생한 응답자의 경우 자신이 출생지역에 기부하겠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상관없이 비수도권에 기부하겠다는 응답자가 5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향사랑기부제도가 도입될 경우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기부금이 많아지게 되며, 이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재정격차가 다소 완화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절하다고 응답하여, 현재 제시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세액공제 수준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세액공제가 확대될 경우 더 많이 기부를 하겠다는 응답자가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본의 경우 기부금의 거의 대부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제공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재 계획된 세액공제 혜택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넷째, 답례품 제공 여부와 관련하여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 제공에 대해서는 74.0%의 응답자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호하는 답례품 유형으로는 지역 농산물, 지역 공공시설 이용권, 지역 축산품 등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답례품의 적정 비율에 대한 분석결과 90.4%의 응답자가 답례품 비율을 기부금의 3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하였다. 답례품 과열 경쟁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야기되었던 일본 사례를 통해서 볼 때에도, 고향사랑기부금의 30% 이하로 답례품 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답례품 제공과 관계없이 자신이 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기부금을 기부할 수 있는 일본의 GCF형 고향납세제도에 대한 벤치마킹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고향사랑기부제도 도입 방안

이 연구에서는 기부자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고향사랑기부제도 정부(안)(행정안전부, 2018)¹²⁾에 대한 바람직한 정책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제도 도입 목적의 단순화

고향사랑기부제도에 대한 정부(안)은 ‘모든 국민은 현 거주지 관할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기부자와 기부대상 지역의 제약조건을 대폭 완화하였다. 따라서 자신이 사는 지역이 아니라면 모든 국민이 수도권이나 농어촌을 막론하고 전국 어느 지방자치단체에나 기부가 가능하다. 즉, 고향사랑기부금 기부를 거의 전적으로 기부자의 자발적 의사에 맡긴다는 것이다.

제4조(모금 주체 및 대상)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다.
-----------------	--

이처럼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부자(누가) 및 기부대상지역(어디에)에 대한 자격요건을 제한하

12) 행정안전부(2018)에서 제시한 고향사랑기부제도 도입 방안은 이개호의원(안)의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 않을 경우 이 제도의 목적 또한 구체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15개 고향사랑기부제도 관련 법률(안)에는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도입 목적이 지방 재정 확충, 지역 간 세수불균형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고용 증대, 인구고령화 해소, 지방소멸 억제 등 매우 다양하게 주장되고 있다. 따라서 가장 먼저 부각되는 쟁점은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에 의존하는 고향사랑기부제도가 과연 정부가 기대하는 다양한 정책목적에 동시에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다.

특히 그동안 국회에서 발의된 대부분의 법률(안)과 정치권·지방자치단체·지역언론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고향사랑기부제도의 핵심 목적이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의 수평적 형평성 개선’이라는 점에서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기부로써 과연 이 목표의 달성이 가능한가 하는 의문이 발생하는 것이다.¹³⁾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일본의 경우 최근 고향납세 규모가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규모에 있어서는 지방세 수입 대비 고향납세 비중은 여전히 1% 미만¹⁴⁾에 불과하여 고향납세제도가 지방재정의 판도를 바꾸기에는 매우 미흡함을 시사하고 있다(염명배, 2019).

이 연구의 분석결과 역시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격차 완화 효과에 대해서 기부자들이 그다지 수긍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고향사랑기부제도 도입이 지방재정 확충 효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본 반면(긍정적 응답률 41.0% > 부정적 응답률 26.3%),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데 대한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으로 나왔다(부정적 응답률 40.2% > 긍정적 응답률 26.3%).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도 도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긍정적 응답률 48.5% > 부정적 응답률 13.9%). 따라서 이러한 결과에 근거할 때 대부분의 법률(안)에서 주장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효과는 정책목적에서 제외하고 단순하게 지방재정 확충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무게중심을 두는 편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정부(안)를 보면 도입 목적이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마련된 재원을 주민의 복리 증진

13) 일본도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한 바 있다. 일본 고향납세제도의 출발점은 삼위일체 개혁 이후 오히려 확대된 지역 간 재정력격차(세수격차)를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었다(염명배, 2010; 신두섭·염명배, 2016; 주만수, 2017). 다시 말해 2006년 니시카와 카즈미(西川一誠) 지사가 ‘고향 기부금에 대한 공제’를 주창할 당시만 해도 지방 간 재정격차(및 세수과소) 문제 해소가 주된 목표였다(원종학, 2017). 하지만 ふるさと納税研究会는 논의과정에서 이 제도로 재정력격차를 완화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고 제도 도입 의의에서 ‘재정력격차 완화’라는 항목을 제외시켜버렸다(주만수, 2017; 염명배, 2019에서 재인용).

14) 2016년도 고향납세 기부액은 2,844억엔으로 지방세 수입액인 38조 5,561억엔의 0.73% 수준에 불과하다(국중호·염명배, 2018).

등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매우 포괄적인 목표만이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표현만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이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격차의 완화를 의미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염명배, 2019).

제1조(목적)	이 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와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마련된 재원을 주민의 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도입 목적을 너무 다양화하지 말고 우선은 ‘애향심 고취’와 ‘지방재정 확충’으로만 단순화할 것을 건의하고자 한다. 특히 일본에서도 논란이 되었던 ‘지방재정의 불균형 완화’는 정책목표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세액공제 수준 정부안 유지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얼마나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 고향납세제도의 경우 수입액과 수입건수가 2015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총무성은 2015년에 시행된 세제개정(‘윈스 톱트레제도’ 도입 및 특례공제 한도 상한 두 배 인상)을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였다. 이는 기부자들이 세제 인센티브에 대하여 크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염명배, 2017).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의 기부금 공제는 모두 ‘국세(+10% 지방세)에서 세액공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황주홍·안호영·김광림 의원(안)은 현행 기부금품법에 의한 공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방안이고, 전재수·강효상·이개호 의원(안)은 정치자금기부금(정치후원금) 공제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김두관 의원(안)은 정치자금기부금(정치후원금) 공제 규정과 같지만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염명배, 2019).

세액공제에 관한 정부(안)에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정부(안)의 모체가 된 이개호 의원(안)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하며, 10만 원 초과 ~ 2천만 원까지는 16.5%(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1.5%),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3%(소득세 30% + 지방소득세 3%)를 세액공제 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다.

설문조사 결과 기부자들은 세액공제율 확대에 대해서는 그다지 적극적으로 동의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안)대로 세액공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51.8%)이 계획보다 축소하자는 의견(15.2%)이나 확대하자는 의견(33.0%)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리고 세액공제를 확대하더라도 기부금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견(37.5%)이 내지 않겠다는 의견(28.8%)이나 내겠다는 의견(33.7%)보다 많았다는 조사결과는 기부자들이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에는 그다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일단은 정부(안)대로 세액공제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p>①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제1호를 따르되,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 × 110분의 100 2. 1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10만원 × 110분의 100 +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원) × 100분의 15 3. 2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기부한 경우: 10만원 × 110분의 100 + 1,990만원 × 100분의 15 + (고향사랑 기부금 - 2천만원) × 100분의 30

3) 답례품 제공 허용하되 답례품 비율 10% 이하 유지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의 대가로 답례품 제공을 허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정책목적에 따라 장단점의 상충(trade-off)관계가 발생하는 매우 민감한 사안 중 하나이다. 이는 답례품 제공이 순기능(장점)과 역기능(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염명배, 2017). 일본에서 고향납세에 대한 답례품제도를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 간 과열양상이 격화되면서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¹⁵⁾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나라에서도 답례품 제공을 허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답례품제도에 대한 정부(안)은 답례품을 허용하기는 하되 한도를 두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한도를 얼마로 할 것인가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 연구는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답례품 제공을 허용하되 지역별 생산능력의 격차에도 불구하고 과당경쟁이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답례품 제공 한도(상한액)를 상징적(즉, 일본 정부가 권고하는 30%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매우 낮게 제한하는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윤영일 의원(안)처럼 ‘10% 이내’의 일반적인 한도를 적용하거나, 김광립 의원(안)과 같이 기부금 규모에 따라 상한액 최저 4% ~ 최고 10% 수준 정도로 해서 일단 10% 이하로 기부금 대비 답례품 비율을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염명배, 2019).

15) 일본 답례품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염명배(2019)에 제시되어 있다.

<p>제8조(답례품의 제공)</p>	<p>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p> <p>②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제1항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공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특산품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제조된 물품 2.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 3. 그 밖에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것 <p>③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금 2. 고가의 귀금속 및 보석류 3. 제2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 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

【참고문헌】

- 국중호·염명배. (2018). 일본 고향납세의 기부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재정논집』, 23(2): 73-109.
- 남황우. (2017). 후루사토납세제도에 있어 기부의 기점과 종점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재정논집』, 22(2): 191-225.
- 신두섭·염명배. (2016). 일본의 고향납세제도 도입 성과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재정정책논집』, 18(4): 145-194.
- 신두섭·하혜수. (2017). 고향발전기부금 제도의 도입 가능성 연구: 기부동기 및 지불의사액 추정. 『지방정부연구』, 21(1): 437-469.
- 염명배. (2010). 일본 ‘후루사토(故郷)납세’ 제도에 대한 논의와 ‘한국형’ 고향세(향토발전세) 도입 가능성 검토. 『한국지방재정논집』, 15(3): 71-111.
- _____. (2017). 우리나라 고향세제도 법제화 논의와 쟁점사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재정논집』, 22(3): 27-77.
- _____. (2018).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의 성공적 도입방안에 관한 소고(小考). 『지방재정』, 6(42): 30-51.
- _____. (2019). 성공적인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을 위한 정책대안 시나리오 및 정책제언. 『재정정책논집』, 21(3): 63-109.
- 원종학. (2017).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와 시사점. 『재정포럼』, 6: 6-23.
- 육동한·박상현. (2017). 진화하는 일본의 고향세와 새 정부 고향사랑기부제 추진방향. 『정책메모』, 626. 강원연구원.
- _____. (2018). 날개를 단 일본의 고향세와 우리나라의 고향사랑기부제 방향. 『정책메모』, 701. 강원연구원.
- _____. (2019). 고향사랑기부제, 이제는 마무리를! 최근 동향과 시사점. 『정책메모』, 770. 강원연구원.
- 육동한·박상현·염명배·전지성. (2017). 「고향사랑기부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 강원연구원.
- 이상호. (2018). 한국의 지방소멸 2018. 『고용동향 브리프』, 2018. 07. 한국고용정보원.
- 이병산. (2018). 고향납세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세무와 회계저널』, 19(1): 79-113.
- 임정빈·김성찬·홍근석. (2017).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도입효과 분석. 『현대사회와 행정』, 27(4): 69-101.
- 조재욱. (2019). 지역균형발전의 정치경제: 고향세 도입의 실효성 시탐과 비판적 검토. 『지역산업연구』, 42(3): 33-60.

- 주만수. (2017). 고향기부제도에 대한 비판적 평가: 일본 고향납세제도의 경험과 지방분권 원리에 기초하여. 「지방행정연구」, 31(3): 245-272.
- 홍근석. (2019). 고향사랑기부제도 도입 논의와 관련 쟁점분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획세미나 발표논문집」.
- 홍근석·염명배. (2019). 「일본 고향납세제도 현황과 우리나라 적용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홍근석·임정빈. (2019). 조건부가치측정법을 활용한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도입 효과 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3(3): 1-31.
- 행정안전부. (2018).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계획(안)」.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홍 근 석: 건국대학교에서 행정학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며, 주요 관심분야는 지방재정·지방분권·지방자치 등이다. 최근 논문으로는 주민참여를 통한 지방정부의 재정책임성 확보방안 연구(2019), 조건부가치측정법을 활용한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도입 효과 분석(2019), 무조건부 보조금의 끈끈이 효과에 관한 분석: 공간회귀분석을 중심으로(2019) 등이 있다(hong0582@krila.re.kr).

염 명 배: 미국 Johns Hopkins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충남대학교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요 관심분야는 국가재정·지방재정·공공요금 등이다. 최근 논문으로는 성공적인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을 위한 정책대안 시나리오 및 정책제언(2019), 일본 고향납세의 기부특성에 관한 연구(2018), 우리나라의 고향세제도 법제화 논의와 쟁점사안에 관한 연구(2017) 등이 있다(mbyeom@cnu.ac.kr).

신 두 섭: 일본 Kyoto University, Nagoya University에서 경제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으로서 주요 관심분야는 지방재정, 공공경제 등이다. 최근 학술활동으로는 Impact of Sectoral Concentration and Human Capital on Change of Macro Economy(2019), 고향발전기부금 제도의 도입 가능성 연구: 기부동기 및 지불의사액 추정(2017), 일본의 고향납세제도 도입 성과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2016) 등이 있다(sds@krila.re.kr).

